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회사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2026.1.1. ~ 2026.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 (거주지국 코드: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혼인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2		1			국세청계			800,000					3,000,000	
								기타계									
0	(본인 이름)		○					국세청			800,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1	(어머니 이름)		○		√			국세청								3,000,000	
1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일반	장애인 특수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15,000,000	2,000,000	1,000,000				
기타 계									
국세청			15,000,000	2,000,000	1,000,000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Ⅳ.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24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5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6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0,000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2,000,000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000,000		
		④ 문화체육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18,000,00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Ⅴ.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3,000,0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800,000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세이하·65세이상인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3,000,000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				15%, 25%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100/110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40%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초과분 일반	기부금액				15%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액				30%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15%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5% 또는 1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근로자 이름)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 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주택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되,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을 별도로 적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 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600만원[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제	구 분: 2024년 ~ 2026년 출자분·투자분 / 공제율: 10%(100%,70%,30%) / 한 도 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사용분(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습니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40%

4.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7천만원)과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 부양자녀: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총급여만 있을 것
② 나이가 20세 이하(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일 것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부양자녀 없음	300만원	250만원
	부양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부양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사용분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세액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정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아.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9세 미만(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직계비속등을 위해 지출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혼인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1.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회사 이름)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근로자 이름)	④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근로자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회사 주소)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금융회사 이름)	(계좌번호)	3,000,000	450,000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1)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저축 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소득공제금액란, 세액공제금액란 및 소득·세액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 ]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㉑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명 (상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 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㉕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예시 — 가상의 인물로 채운 예시이며 제출용이 아닙니다. 파란 글씨는 예시 값, 회색 글씨는 실제 정보를 적을 자리입니다.
https://taxaction.ai.kr/guide/deduction-form-example · 서식 원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 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 지급회차 [1 또는 2]	

작성방법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 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